

서울·경기 소재 대학도서관의 장애학생 지원 실태 조사

A Study on Supportive State for Disabled Students of University Libraries in Seoul and Kyonggi

박현영*·남태우**

Hyun-Young Park · Tae-Woo Nam

차 례

- | | |
|-----------|-----------|
| 1. 서론 | 4. 조사의 분석 |
| 2. 선행연구 | 5. 결론 |
| 3. 이론적 배경 | • 참고문헌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장애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하였다.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사립대학들 중에서 2008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시행한 30개 대학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그 대학의 장애학생들은 도서관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자료, 그리고 전담 직원이 현재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설치 유무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학도서관에 장애 학생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 수준은 “보통” 이하(평균2.38)로 조사되었으며, 이용률은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60.0%)로 응답한 대학이 가장 많았다.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서비스 등의 응답물에서는 “매우 미흡”을 응답한 대학이 99건(32.27%)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우수”를 응답한 대학이 28건(7.0%)으로 가장 적은 응답수를 나타냈다. 한편, 부문별로 분석했을 때, 전 물의 시설은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평균3.26)의 수준을 갖추고 있으나, 자료구비수준(평균1.8점)과 장애 학생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한 직원교육과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이용교육(평균1.87)은 “미흡” 이하의 수준이었다. 특히, 서비스 부문은 “미흡”(평균2.48)의 수준으로, 표준편차는 1.4이상으로 인력배치와 자료배달 서비스는 대학 간의 편차가 가장 큰 부문이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시설 등의 접근성은 상당 수준 개선되었으나, 자료, 인력 및 이용교육과 같은 도서관 고유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있다고 조사되었다.

키 워 드

장애 학생, 장애 학생 대학도서관 서비스, 장애 특수자료

* 협성대학교 학술정보관 운영과장

(Chief of Management Office, Hyupsung University, hypark@uhs.ac.kr)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Professor,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ung-Ang University, namtw@cau.ac.kr)

• 논문접수일자 : 2008년 2월 29일

• 게재확정일자 : 2008년 3월 17일

ABSTRACT

This thesis investigated disabled students' actual status of applying for university libraries. This thesis investigated how many times the university disabled students utilized the libraries, if facilities, apparatuses, materials, and regular employees were operated properly, and if they were established actually on the target at thirty private university libraries located at Seoul and Gyeonggi regions in operation of specially screening the objective students for special education in 2008.

The investigation found that the general operation level of university libraries for disabled students were less than "medium"(average 2.38). As for utilization ratio, the most university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didn't utilize libraries so many times(60%)". As for the response ratio of university library facilities and services, the most university students responded, "very insufficient", 99 items(32.27%), and the least university students responded, "very excellent", 28 items(7.0%). On the other hand, as for the analysis of each field, building facilities, in all of the items, were established more than "medium"(average 3.26), but material preparation level(average 1.8 point), employee education for softly supporting disabled students, and library utilization education on the target at disabled students(average 1.87) were less than "insufficient". Especially, the field of service was "insufficient level"(average 2.48), and standard deviation was more than 1.4. Manpower stationing and material delivery services have the biggest standard deviation between universities. So, this investigation found that university libraries reformed access to facilities a lot, but that its level of fundamental policy for library, such as materials, manpower, and the education on utilization, were in insufficient level.

KEYWORDS

Disabled Stud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누구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일반적인 신체적·정신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 중의 하나

가 장애인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88장애인올림픽을 기점으로, 1990년대 초반에 장애와 관련된 법과 제도들을 입법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불완전한 소수 그룹에 속하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고 형식적이다. 교육받은 권리 또한, 장애인들은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비장애인들의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해

왔다. 1995년 이후에 정부가 대학에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울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비로소 장애인을 위한 대학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고, 이로써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들을 지원하기 이르렀다. 하지만 대학은 소수를 대상으로 한 편의시설이나 기기들을 도입하는 것이 예산상 여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장애인 입학전형을 허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즉, 정부 정책으로 인해 수용되어진 대학의 장애학생 입학은 상당기간동안 형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장애학생들은 대학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접근권을 제한받거나 물리적 교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학문성취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수행하고 있는 사립 대학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장애학생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시설 및 서비스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장애학생들을 얼마나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더불어 장애학생을 위해서 대학도서관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갖추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대학도서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당국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설 접근권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도서관의 고유한 지원 서비스인 자료, 인력 등에 대해서는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관련 법령들, 국내 대학과 대학도서관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및 서비스 실태, 그리고 지역별 장애인도서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 및 운영방법을 조사하였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도서관의 운영 현황 조사는 2007년 12월 12일~29일에 걸쳐서, 해당 대학 도서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서를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범위는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에 사용될 문항은 문헌조사를 토대로 개발하였다. 설문문항은 세 가지의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첫번째는 실태 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장애학생들의 대학도서관 이용률에 대하여 조사한 문항이고, 두번째는 장애학생을 위한 해당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서비스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에 의해 응답하도록 구성된 문항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해당 대학도서관에서 실제로 설치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는 시설, 기자재, 서비스 등을 “유” 또는 “무”로 표시하도록 구성하였다. 분석도구는 SPSS 14.0K를 이용한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으로 수행하였다.

2. 선행연구

2.1 국내 연구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의 전반에 대한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및 방안과 개별 대학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장애학생 지원 실태 및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정정진(2003)은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교육복지지원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평가방법은 선발 영역, 교수·학습 영역 및 시설·설비 영역의 3개 영역을 편성하여 평가항목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시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서관의 평가기준은 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열람실과 자료검색실 등으로 가중치 5점을 배점하였다. 이 평가기준으로는 장애학생의 접근과 이용이 빈번한 시설 중에서 대학생활 중 필수적인 이용시설인 도서관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물리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장애를 갖은 학생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구비, 정보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정보의 이용교육 실시, 인적 지원 등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개별 대학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장애학생 지원 실태 및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노명수(2006)는 H대학교의 도서관 이용자,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시설에 대한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도서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지체장애학생들로 제한하여 조사되었으며, 이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시설부분에 많은 제안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2006)에서는 '2005년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사례'를 공모하여, 23개 대학의 우수사례를 제 공하였다. 이들 중에서 한양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더불어숲'이라는 장애학생 전용 공간을 장애학생들이 출입하기 쉽도록 도서관 1층에 마련하고, 각종 장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보조장비 및 소프트웨어들을 지원하고 있다.

2.2 국외 연구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대학도서관 관계자의 인식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와 물리적 지원 수준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았다.

P. A. Deveaux(1982)는 대학의 신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를 도서관 시설, 행정관리정책, 그리고 정보기기의 세가지 분류항목으로 문항을 개발하였다. 한편, 대학도서관장 84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신체장애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을 관찰하도록 하였다. 이후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신체장애학생들과 관찰에 참여했던 도서관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신체장애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들 두 부류는 각각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였다. 그 결과, 신체장애학생들에게는 신체적인 면과 심

리적인 면의 이중 장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사서는 신체장애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사서가 신체장애학생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10개항의 바람직한 심리적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J. Chelin(1999)는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나 직원들이 학술자료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1998년에서 1999년까지 UWE(the University of the West of England)에서 수행한 "FACE"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보고하였다. 장애 학생들과 직원들을 위한 지원에는 배우고 가르치는 자료들로 접근하는 것에서 문제가 나타난다. 이 프로젝트가 "접근성(accessibility)"을 촉진시키는데 기술의 선정에 집중했었으나, 접근 가능한 학습 자료와 지원의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주안점은 견실한 투자기관의 참여와 좋은 인적 하부조직이라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다른 조직들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련의 권고사항으로 결론지었다.

C. Pinder(2005)는 장애를 갖고 있는 고객이라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장애 학생 수의 증가와 장애인법에 대한 UK 내에 있는 일반 대학도서관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HESA(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의 통계에서는 2003년과 2004년동안 UK에 있는 고등교육에 입학한 학생들의 5% 이상이 장애를 갖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1995년에

장애인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 제정되었고, 특수교육의 요구와 장애인법(the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Act, SENDA)이 통과된 2001년 이후에 와서 고등교육에 입학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학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대학도서관은 장애 학생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고려해야 하는 방법을 SENDA의 하부조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1단계는 장애학생을 이해하는 단계로 그 학생이 어떤 장애를 갖고 있으며, 이 정보가 왜 필요한지와 정보를 이용할 학생과 이야기하는 것과, 학생의 요구가 다른 도서관 직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는 방법 등을 포함시키도록 제안하였다. 2단계는 장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정책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 서비스와 웹사이트 및 공지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인쇄된 자료를 이용가능한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적합한 기술 항목을 구입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이해도를 높이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대학도서관이 장애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또한 일반 학생과 마찬가지로 대학도서관의 3요소인 편의시설, 자료의 접근 및 이용, 인력 지원에 있어서 장애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된 인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이론적 배경

3.1 장애인 정의 및 현황

3.1.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이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¹⁾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장애인에 대한 유형과 기준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개념을 국제연합에서 제시한 장애인권리선언 제1조²⁾에서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고,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에서 장애의 3가지 차원을 손상(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ies), 사회적 불리(Handicap)로 정의하였다. 즉, 1차 손상(Impairment)은 “유전, 사고 또는 질병 등에 의해 심리적, 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이상”을 의미하고, 2차 능력장애(Disabilities)는 “손상이 장기간에 걸

쳐 지속된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 간주되는 장애”를 의미하며, 3차의 사회적 불리(Handicap)는 “손상이나 능력장애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적 불이익으로 연령, 성, 사회 문화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제약 또는 방해받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한다.³⁾ 세계보건기구는 이렇게 장애의 개념을 넓게 정의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세계인구의 10%가 장애 인구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였다. 한편, 장애인의 범주를 관점에 따라 첫째, 생물학적, 해부학적 관점에서 신체구조 또는 기능상의 이상, 손상, 상실, 결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둘째, 의학적 관점에서 신체구조, 기능상의 만성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제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신장기능장애, 심장기능장애, 간질자 등), 셋째, 심리학적 관점에서 지적 능력의 발달자체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정신지체, 학습장애, 정서장애 등)이다.

이와 같이, 노명수(2006)는 정상과 장애의 구분은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장애 상태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2) UN, 1975.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3) 세계보건기구는 1980년에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에서 3가지 차원으로 장애분류모델 1차(ICIDH-1)를 정의함

받으며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환경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손상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애의 문제는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3.1.2 장애의 유형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까지 장애인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총 5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나, 2000년 1월 제1차 장

애범주 확대를 통하여 뇌병변, 신장, 심장, 정신, 발달장애 등 5개 항목이 추가되어 총 10개로 확대되었으며, 다시 2003년 7월 제2차 장애범주 확대를 통해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등 5개가 더 추가되어 현재 총 15개의 장애 유형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장애인의 범주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상이유공자’라고도 부르는 이들 역시 장애인에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상무성의 “National Telecom-

〈표 1〉 장애 유형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인(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자폐성장애인(발달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 1차 장애범주 확대(2000. 1) :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 2차 장애범주 확대(2003. 7) :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 출처 : 장애인복지법 2조2항. <<http://www.mohw.go.kr/>>. [인용 2007.12.15].

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자료에서는 장애의 종류를 6가지인 복합장애, 맹인/시각장애, 청각장애, 보행장애, 타이핑장애, 그리고 이소(Leaving Home) 장애로 분류하였다. 또한 ISO/IEC에서는 장애의 요소를 크게 4가지인 감각적, 신체적, 인지적, 그리고 알리지 요소로 분류한 다음에, 감각적 요소를 다시 5가지인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취각, 및 균형감각으로 세분하였다. 신체적 요소는 5가지인 손떨림(dexterity), 조작, 이동, 근력, 그리고 목소리로, 인지적 요소는 지능과 기억, 그리고 언어 및 읽고 쓰는 능력으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리지 요소에는 접촉과 음식물과 호흡기만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표 1>의 장애인 분류에 해당되어야 한다.

상기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1차적 손상이, 2차 장기간에 걸쳐 의학적으로 지속된다고 판단되는 능력장애로, 3차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되는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유형 역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범주에 준하여 외부신체기능장애, 내부기관장애, 그리고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위의 정신적 장애에 속해 있는 ‘정신지체’와 ‘발달장애’라는 명칭은 2007년 10월 15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서 ‘정신지체’는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다. “지적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자폐성장애인”이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장애의 등급은 장애유형별로 1급에서 6급까지 6등급으로 구분되었으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장애유형별로 장애등급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별도의 물리적 공간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외부신체기능 장애인이 8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지체장애인 비율이 전체 등록장애인의 53.2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비율도 다른 유형의 장애인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 장애유형별로 장애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장애유형별로 1급에서 6급까지의 장애등급이 외부신체기능장애에서는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내부기관장애와 정신장애를 갖은 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지의 고도장애에 집중되어 있다. 즉, 내부기관장애인은 1급에서 3급

〈표 2〉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총괄표

(단위 : 명)

장애유형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 계	비율(%)
외부 신체 기능 장애	지체		41,108	86,557	161,011	198,547	295,688	287,539	1,070,450	53.24
	뇌병변		52,678	58,969	47,998	18,549	13,061	8,807	200,062	9.95
	시각		31,185	8,098	11,365	10,605	17,532	131,183	209,968	10.44
	청각·언어		4,839	47,651	40,495	43,265	36,353	31,630	204,233	10.16
	안면		58	339	678	859	1	1	1,936	0.10
소 계			129,868	201,614	261,547	271,825	362,635	459,160	1,686,649	83.89
내부 기관 장애	신장		1,917	36,078	19	202	7,269	-	45,485	2.26
	심장		680	2,693	10,507	6	131	-	14,017	0.70
	호흡기		2,495	3,719	7,184	1	-	-	13,399	0.67
	간		941	1,209	1,432	66	2,436	-	6,083	0.30
	장루·요루		19	194	845	4,188	5,476	1	10,723	0.53
	간질		160	996	2,550	4,470	-	-	8,176	0.41
소 계			6,212	44,889	22,537	8,933	15,312	1	97,883	4.87
정신 장애	정신지체		40,524	54,196	42,380	2	-	-	137,102	6.82
	발달(자폐)		4,264	4,931	2,065	-	-	1	11,261	0.56
	정신		11,904	41,429	24,363	3	-	1	77,700	3.86
소 계			56,692	100,556	68,808	5	-	2	226,063	11.24
합 계			192,772	347,059	352,891	280,763	377,947	459,163	2,010,595	100.00

* 출처 : 등록장애인 현황, 보건복지부, 2007.

까지가 전체 9만7,883명 중에서 7만3,638명으로 75.23%를, 정신장애인은 전체 22만6,063명 중에서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이 22만 6,056명으로 99.99%로 집중되어 있다.

3.1.3 장애인 수의 증가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애인의 출현율은 계속 증가하여, 보

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007년 3월 현재 200만 명을 넘고 있다. 1997년에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의 5가지 장애로 등록된 수가 42만5,064명 정도에서 1999년도에는 69만7,513명으로 해마다 10만명이상 증가한 것으로 산출된다. 1997년도부터 연도별 등록장애인의 증가율을 살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연도별 장애인 수의 증가

연도		1997	2000	2003	2005	2006	2007
외부 신체 기능 장애	지체	294,419	606,422	813,916	959,133	1,049,396	1,070,450
	뇌병변	-	33,126	117,514	167,570	194,345	200,062
	시각	27,211	90,997	152,857	188,172	206,151	209,968
	청각·언어	43,875	87,387	139,325	174,302	198,563	204,233
	안면	-	-	673	1,481	1,863	1,936
소 계		365,505	817,932	1,224,285	1,490,658	1,650,318	1,686,649
내부 기관 장애	신장	-	23,427	34,884	41,579	44,571	45,485
	심장	-	4,971	10,409	12,705	13,738	14,017
	호흡기	-	-	7,039	11,635	13,035	13,399
	간	-	-	3,108	5,126	5,875	6,083
	장루·요루	-	-	6,585	9,520	10,461	10,723
	간질	-	-	3,262	6,624	7,891	8,176
소 계		-	28,398	65,287	87,189	95,571	97,883
정신 장애	정신지체	59,559	86,793	112,043	126,764	135,452	137,102
	발달(자폐)	-	1,514	5,717	9,466	10,926	11,261
	정신	-	23,559	46,883	63,323	75,058	77,700
소 계		59,559	111,866	164,643	199,553	221,436	226,063
합 계		425,064	958,196	1,454,215	1,777,400	1,967,326	2,010,595

* 출처 : 등록장애인 현황, 보건복지부, 2007.

상기의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인 수의 증가는 장애범주가 확대되어 증가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에서 해마다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외부신체기능 장애인의 경우, 1997년에는 36만5,505명이었으나 10년 후인 2007년 등록장애인 현황에서는 168만명으로 4.6배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수의 증가 요인에는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생명을 연

장하게 된 효과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한 효과라 판단된다. 즉, 과거에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간주했던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오늘날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등록장애인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이제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불완전한 소수의 특정계층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

다. 장애를 갖고 있지만 또 다른 가능성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서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3.2 법적·제도적 근거

3.2.1 장애인 관련 법률

우리나라의 현행법 중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 개념은 일반적으로 이 법에 근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법률적 근거 중에서, 장애인 교육이나 편의시설 및 정보 접근 등에 관련된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에서 도서관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등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⁴⁾ 최근, 정보기술이 발달되면서 제정된 장애인 관련 법률에는 2001년에 제정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⁵⁾이 있다. 이 법은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환경 조성, 기술개발의 촉진, 정보통신기기 지원, 정보화 교육 실시 등을 법적으로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소외계층에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43조에서는 “도서관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

〈표 4〉 장애인의 교육 및 정보 접근 관련 법률

제정연도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교육 및 시설 관련 조항
1977	특수교육진흥법	
198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89	장애인복지법(심신장애자복지법(1981) 개정)	제8조, 제20조, 제21조
199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00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2006	도서관법(도서관 및 독서진흥법(1994) 개정)	제43조, 제44조
200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4) 도서관법 제1조 :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 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

5)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조 :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자료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정하였다.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장애인 정보격차의 해소는 비장애인과 같이 장애인들에게도 시설, 기기, 자료, 프로그램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장애인들의 각종 사회활동의 완전참여와 정보의 접근, 교육 및 고용기회 등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10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또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로 특히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확대자료,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화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기 등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이 법률들은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기관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장애라는 사유로 도서관들이 장애인들을 시설 및 자료의 접근과 프로그램 등에서 배제, 소외, 제한, 차별, 거부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권리가 박탈당하거나 침해되었을 때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하나의 무기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률적 근거들 중에서 대학도서관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들을 살펴보면, 특수교육진흥법 10조에서는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주를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기타 교육인적자원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을 신청하고,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3.2.2 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별전형입학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이후부터 대학에 장애인 특별전형입학을 제도화시키면서, 대학에서도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및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모집대학은 2008학년도 현재 전국 210여개의 대학 중에서 87개 대학으로 50% 미만의 대학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증가추세로 보았을 때, 향후 더 많은 대학들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도부터 매년

〈표 5〉 국내 대학의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모집 대학

연도	설치 대학 및 추가설치 대학	전년도의 제외 대학	대학수
2006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강남대, 강릉대, 전국대, 전국대(충북), 전양대, 경인교육대, 고려대(서울), 고려대(충남), 공주대, 군산대, 그리스도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경기), 대구대, 대불대, 동국대(서울), 동국대(경북), 동명대, 루터대, 명지대(서울), 명지대(경기), 목원대, 배재대, 부산대, 부산장신대, 삼육대, 상명대(서울), 상명대(충남), 상지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연세대(서울), 연세대(강원), 영동대, 예원예술대, 용인대, 우석대, 이화여대, 인천가톨릭대, 장로회신학대, 전남대(여수), 전북대, 전주대, 제주교육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서울), 중앙대(경기), 창원대, 춘천교육대, 충북대, 충주대, 한국체육대, 한남대, 한림대, 한양대(서울), 한양대(경기), 한일장신대		70
2007	강원대, 경상대, 경희대(서울), 목포대, 서울교육대, 서울시립대, 전문대, 전남대(평주), 전주교육대, 충남대, 한경대, 한국성서대	대불대, 중부대	80
2008	경북대, 경희대(경기), 공주교육대, 광주교육대, 대구교육대, 중부대, 진주교육대, 청주교육대	한경대	87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8학년도 특별전형입학정보, 〈<http://www.kcue.or.kr>〉.[인용 2007.12.19]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모집을 실시한 대학은 〈표 5〉와 같다.

상기의 〈표 5〉과 같이, 2006년도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대학은 70개 대학으로 2007년도에는 2개 대학이 전형에서 제외되고 12개 대학이 추가되어 80개 대학으로 증가되었다. 이번 2008년도에는 전년도에서 1개 대학이 제외되고, 대신 8개 대학이 추가되어 총 87개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였다.

이들 대학들 중에서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중심으로 각 대학의 특별전형 규정을 분석해 보았다. 각 개별 대학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별전형을 자체적으로 규정화한 바,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진흥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는 선정기준과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을 제한하여 규정화한 대학이 있다. 다음 서울·경기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모집 대학이 정한 특별전형 규정을 비교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을 살펴보면, 30개 대학 모두가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진흥법 등 법령에 준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그 외에 “2)선정기준”에서 ‘학습가능자’, ‘특수시설을 요하지 않는 자’, 또는 ‘해당대학 특수교육대상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등의 별도 규정을 정한 대학이 있다. “3)장애유형”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서 정한 장애인 외에, 대학별로 ㉠지체장애(뇌병변장애 포함), ㉡청각장애,

〈표 6〉 서울·경기 지역 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정원외 특별전형 규정 비교표

구분	구분 내용	적용 대학
적용 법령	㉞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	30개 대학 모두
	㉟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특수교육대상자	
2) 선정 기준	㉠ 법령에 의한 자	①③④⑤⑦⑧⑨⑮ ⑯⑲⑳㉑㉒㉓㉔
	㉡ 학습 가능자	②⑬⑰⑱
	㉢ 특수시설을 요하지 않는 자	⑩㉕
	㉣ 해당대학 특수교육대상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⑥⑪⑫⑬⑭⑲⑳㉖㉗㉘
3) 장애 유형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장애인	③⑤⑥⑦⑨⑩⑪⑫⑬ ⑯⑰⑲⑳㉑㉒㉓㉔㉕㉖
	㉥ 지체장애(뇌병변 장애 포함)	①④㉚
	㉦ 청각장애자	⑮
	㉧ 시각장애, 지체부자유자	⑧
	㉨ 청각장애, 지체부자유자	㉛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자(뇌성마비 포함)	②⑬⑰⑳㉜
4) 장애 등급	㉪ 장애 1~6등급 전등급	②③④⑦⑧⑩⑪⑫⑬⑭⑰⑱ ㉑㉒㉓㉔㉕㉖
	㉫ 장애 2~6등급 해당자	⑮
	㉬ 장애 1~5등급 해당자	⑨
	㉭ 장애 1~3등급 해당자	①⑤⑥⑯⑲㉑㉒㉓㉔

㉠시각장애, 지체부자유자, ㉡청각장애,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자(뇌성마비 포함)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4)장애등급에 있어서는 1~6등급 전체 등급을 허용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인 1~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제도적으로 입학의 기회가 제한되었다. 이를 분석해 볼 때, 상기 비교표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전형 혜택을 반영한 ㉠, ㉡, ㉢과 ㉠, ㉡, ㉢의 규정을

채택한 대학은 ①, ⑤, ⑯, ⑲, ㉑, ㉒의 6개 대학이었고, 이외의 24개 대학은 특별 규정을 두어 장애학생 입학에 제한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의 ㉢와 ㉣, 4)의 ㉪과 ㉫의 규정은 장애인에게 상당 부분 제한을 두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3.3 대학도서관에서의 장애 학생 지원 요소

3.3.1 시설 및 기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접근권이란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

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들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나 결함에 의해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불완전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제거하기 위한 기구나 시설, 설비를 말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편의증진법 제2조2항⁶⁾에서 장애

〈표 7〉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목록

품 목	장애유형	분류	품 목	장애유형	분류
1. 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정보 접근	17. 특수 작업의자	전유형	의사 소통
2. 점자프린터			18. 작업물 운반장치		
3. 화면확대 S/W			19. 신호장치	청각	
4. 음성출력 S/W			20. 골도전화기		
5. 확대독서기			21. 문자전화기		
6. 문서인식S/W			22. 화상전화기		
7. 대형모니터			23. 소리증폭장치		
8. 특수키보드	전유형	작업 기구	24. 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	전유형	사무 보조
9. 특수마우스			25. 시각장애인계산기		
10. 입력 보조장치			26. 음성메모기	전유형	
11. 선택장치			27. 책장넘기는 도구		
12. 자세 보조장치			28. 수화기 홀더		
13. 특수 S/W			29. 팔 지지대		
14. 높낮이조절 테이블			30. 물건집게		
15. 경사각 작업테이블			31. 필기보조도구		
16.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32. 원고홀더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조공학기기, <<http://www.kepad.or.kr/>>, [인용 2007.12.15]

6) 보건복지부, 1999. 「편의증진법, 제2조2항」.

인 편의시설의 설치는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자립적으로 영위하고 개인적으로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질 확보를 통한 인간권리의 회복이며, 나아가서는 일반사회와의 통합을 통한 복지사회의 구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함과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편의시설의 기능은 첫째, 장애인의 신체상의 불리함을 보완하여 이동이나 활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장애인의 정신적 측면에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력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게 된다. 넷째, 사회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보면 장애인의 고용이나 취업을 확대시킴으로써 어려움을 해소하게 된다.

상기의 <표 7>과 같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는 장애 유형에 따라 제작된 기기와 전유형이 사용되어지는 기기들이 있다.

3.3.2 장애인용 자료

장애 학생들 중에서 특수자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유형으로는 외부신체적 기능장애의 시각장애인이 있다. 그 외의 다른 장애인들은 편의시설이나 보조기기 등의 지원으로 콘텐츠에 접근이 가능하다. 시각장애 학생에게 제공되는 자료로는 점자자료와 녹음자료가 대표적이다. 지역별 우수 장애인도서관의 13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유형 및 소장 도서관수는 다음 <표 8>과 같다.⁷⁾

상기 <표 8>의 장애인도서관 현지실태조사에서, 지역별 우수 도서관 13개관의 특수자료 형태에는 3가지 형태의 시각장애인용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 13개관 도서관에는 장애인 전문도서관 7개관과 장애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시립도서관 6개관으로 구성되었다. 점자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은 장애인 전문

<표 8> 시각장애인의 자료유형

자료형태	N	소장 도서관수		합계	비율
		전문도서관(7)	시립도서관(6)		
점자자료	13	7	2	9	69.2%
녹음자료	13	6	2	8	61.5%
디지털자료	13	3	0	3	23.1%

7) 2006. 장애인도서관 현지실태조사 결과보고.

도서관이 7개관이고 시립도서관이 2개관으로 총9개관(69.2%)이었다. 장애인전문도서관 중에서도 녹음자료를 소장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이 있었으며, 디지털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은 3개관뿐이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점자자료와 녹음자료는 2개관만이 소장하고 있었으며, 디지털자료는 비장애인을 위주로 구입하여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때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점자자료와 녹음자료는 개별 도서관의 자체제작을 통해 제공되어졌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개별 도서관에서 점역 또는 제작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서관마다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되었다. 자료의 점역과 점자자료의 제작이 빠른 시일 내에 중앙처리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만 도서관 직원은 또한 좀 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전념하고 적극적인 참고봉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3.3 지원 인력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는 장애 학생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는 사서의 서비스 내용이 가장 중요하며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낸다. 남태우 등(2005)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동안 불안을 느낀다”는 연구에 비춰볼 때, 장애 학생들에게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동안 불안을 느낄 것이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도서관교육과 참고봉사가 있다. 즉,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교육과 사서의 대면 서비스는 장애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이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참고봉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서에 대해 꾸준한 재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은 장애의 특성, 커뮤니케이션 방법 및 예절, 수화,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료 목록, 장서관리, 정보서비스, 장애인 관련 법 등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직원 연수는 대학 내의 장애인 단체, 즉 장애인 관련 학생동아리와 같은 단체와의 협력을 의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사서 중에서 장애 학생 담당자를 지정하여 중점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는 학생보조원 또는 조교를 고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일정한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장학금에 대한 자원봉사 형태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자 활용을 고려해야 하며 현재의 학생 사회봉사원에 대한 일정 비율을 장애학생 서비스를 위한 전담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장애학생의 비율에 비해 장애학생의 비율이 극히 적은 대학이나, 혹은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과 시설이 없는 대학일수록 그 대학의 직원과 사서는 장애학생들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쉽다. 이러한 편견과 함께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 연수의 부재는 장애학생 서비스를 그만큼 실현하기 더욱 힘들게 만드는 실체로 여겨지고 있다. 비

특 소수의 이용자인 장애인이지만 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서비스 준비가 서비스 제공자인 사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소 4명에서 최대 38명까지로 정원 외 입학으로 실시되었으며, 분석은 도서관의 3대 요소인 시설, 자료, 인력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4.1 장애 학생의 대학도서관 이용에 대한 기초조사 분석

4. 조사의 분석

이 연구에서는 2008학년도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수행한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당 도서관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들 대학의 연간 모집 학생수는 대학에 따라

이 절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장애학생 지원 실태 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사서를 대상으로 평소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빈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I의 이용빈도에서는 ①='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②='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③='보통정도 이용한다',

〈표 9〉 장애 학생들의 대학도서관 이용도가 높지 않은 이유 분석

		II 이용하지 않는 이유						전 체	
		II-㉓	II-㉔	II-㉕	II-㉖	II-㉗	결측값		
I 이용 빈도	I-①	응답수	0	0	0	0	0	0	0
		I의 비율	.0%	.0%	.0%	.0%	.0%	.0%	.0%
		II의 비율	.0%	.0%	.0%	.0%	.0%	.0%	.0%
	I-②	응답수	2	2	1	5	8	0	18
		I의 비율	11.1%	11.1%	5.6%	27.8%	44.4%	.0%	60.0%
		II의 비율	100.0%	100.0%	100.0%	100.0%	42.1%	.0%	60.0%
	I-③	응답수	0	0	0	0	11	0	11
		I의 비율	.0%	.0%	.0%	.0%	100.0%	.0%	36.7%
		II의 비율	.0%	.0%	.0%	.0%	57.9%	.0%	36.7%
	I-④	응답수	0	0	0	0	0	1	1
		I의 비율	.0%	.0%	.0%	.0%	.0%	100.0%	3.3%
		II의 비율	.0%	.0%	.0%	.0%	.0%	100.0%	3.3%
전 체	응답수	2	2	1	5	19	1	30	
	비율	6.7%	6.7%	3.3%	16.7%	63.3%	3.3%	100.0%	

④='많은 수가 이용한다'로 구성하였다. 한편, II번의 장애학생들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서의 응답으로는 ④='필요치 않아서', ⑤='도서관에 오는 길이 힘들어서', ⑥='도서관 시설이 불편해서', ⑦='대학에 장애학생이 많지 않음', ⑧='모르겠음'으로 구성하였다. 장애학생의 대학도서관 이용빈도와 장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사서들이 생각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상기의 <표 9>와 같이, 장애학생들의 대학도서관 이용률에서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학은 없었다. 즉, ②의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학이 18개 대학이고 ③의 '보통정도 이용한다'고 응답한 대학이 11개 대학, 그리고 ④의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용한다'고 응답한 대학이 1개 대학이었다. 도서관 이용빈도 ②번을 응답한 18개 대학들 중에서 장애학생이 도서관을 별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접근성과 이동성 즉, '⑥ 도서관까지의 이동'과 '⑦ 시설의 불편함' 때문이라고 응답한 대학은 3개 대학뿐이었다. 한편, '왜 이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대학은 19개 대학으로, 이 대학들의 이용빈도는 8개 대학이 ②번에, 11개 대학이 ③번에 응답하였다. 이를 분석해 보면, 장애학생들에 대한 대학도서관 직원들이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도서관에서는 장애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실태를 분명히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개선해야 하는 역할 또한 대학도서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이다.

4.2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서비스의 설문 분석

개별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지원 서비스에 관한 조사는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12개 문항을 해당 대학의 담당자 또는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문항의 통계량은 '①매우 미흡, ②미흡, ③보통, ④우수, ⑤매우 우수'의 5점으로 하였다. 대학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의 기술통계량은 <표 10>과 같다.

<표 10>의 대학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 수행에 대한 사서의 응답에 있어서, 전체 응답의 평균은 2.38(표준편차 1.15)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5점 응답 중에서, "매우 미흡"으로 응답한 대학이 99개(32.27%)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우수"를 응답한 대학이 28개(7.00%)로 가장 적은 응답수를 나타냈다. 문항의 점수로 분석해 보면, 1번에서 3번에 해당하는 건물의 시설은 평균이 모두 3점 이상(평균 3.26; 표준편차 1.07)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 반면, 문항 4번에서 7번까지의 도서관 시설은 2점대(평균 2.47; 표준편차 1.21)이며, 8번과 9번의 서비스 역시 2점대(평균 2.48; 표준편차 1.41)로 모두 "보통" 이하의 수준이나, 서비스 부문의 표준편차는 1.4 이상으로 대학 간의 편차가 가장 큰 부문이었다. 특히,

〈표 10〉 대학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기술통계량

부문	문항\응답지문	N	설문의 응답										평균	표준편차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건물	1. 진출입로	30	1	3.3	8	26.7	7	23.3	10	33.3	4	13.3	3.27	1,112
	2. 출입문	30	0	0.0	11	36.7	9	30.0	7	23.3	3	10.0	3.07	1,015
	3. 화장실	30	1	3.3	5	16.7	9	30.0	10	33.3	5	16.7	3.43	1,073
	부문평균			2.20		26.70		27.77		29.97		13.33	3.26	1.07
도서관 시설	4. 열람실구조	30	7	23.3	5	16.7	9	30.0	7	23.3	2	6.7	2.73	1,258
	5. 안내시설	30	11	36.7	8	26.7	5	16.7	5	16.7	1	3.3	2.23	1,223
	6. 검색좌석	30	7	23.3	9	30.0	7	23.3	5	16.7	2	6.7	2.53	1,224
	7. 서가	30	8	26.7	8	26.7	9	30.0	4	13.3	1	3.3	2.40	1,133
부문평균			27.50		25.02		25.00		17.50		5.00	2.47	1.21	
서비스	8. 인력배치	30	9	30.0	8	26.7	5	16.7	4	13.3	4	13.3	2.53	1,408
	9. 자료검색·배달	30	11	36.7	6	20.0	5	16.7	5	16.7	3	10.0	2.43	1,406
	부문평균			33.35		23.35		16.70		15.00		11.65	2.48	1.41
자료	10. 자료구비수준	30	15	50.0	7	23.3	7	23.3	1	3.3	0	0.0	1.80	0.925
	부문평균			50.0		23.3		26.7		3.3		0.0	1.80	0.93
이해도	11. 직원교육	30	16	53.3	8	26.7	3	10.0	2	6.7	1	3.3	1.80	1,095
	12. 장애학생교육	30	13	43.3	11	36.7	3	10.0	1	3.3	2	6.7	1.93	1,143
	부문평균			48.30		31.70		10.00		5.00		5.00	1.87	1.12
전체 평균		30		32.27		26.01		21.26		14.15		7.00	2.38	1.15
합 계		360		99		94		78		61		28		

도서관에서만 수행되어지는 10번 문항의 자료 구비수준은 1.8점, 11번 문항의 장애 학생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한 직원교육 및 12번 문항의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이용교육은 평균 1.87(표준편차 1.12)로 “미흡” 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아직까지 장애학생들에 대한 처우는 법적·제도적 규제에 의해서 설

치·지원되는 부분은 보통의 수준으로 해결되었으나, 대학도서관 고유의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3 대학도서관에 설치된 세부 항목

이 절에서는 서울·경기지역 대학도서관에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항목들을 세부적

〈표 11〉 대학도서관의 지원 항목

항 목	부 문	설치대학수	비 율
1. 전용출입문	시설	19	63.3%
2. 단차시설		21	70.0%
3. 경사로		22	73.3%
4. 복도폭		22	73.3%
5. 접자유도블럭		11	36.7%
6. 전용화장실		27	90.0%
7. 장애인주차장		29	96.7%
8. 엘리베이터 or 리프트		19	63.3%
9. 촉지판		6	20.0%
10. 차임벨		6	20.0%
11. 경보등		3	10.0%
평 균		185	56.05%
12. 전용컴퓨터	특수 기자재	13	43.3%
13. 전용프린터		7	23.3%
14. 대형모니터		11	36.7%
15. 확대독서기		10	33.3%
16. 접자프린터		8	26.7%
17. 접자정보단말기		3	10.0%
18. 특수키보드		4	13.3%
19. 특수마우스		2	6.7%
20. 특수입력 보조장치		0	0.0%
21. 시각장애인녹음기		0	0.0%
22. 화면확대S/W		9	30.0%
23. 음성지원S/W		7	23.3%
24. 소리증폭장치		0	0.0%
25. 보완대체 의사소통장치		0	0.0%
26. 책넘기는 도구		1	3.3%
27. 펼기 보조도구		1	3.3%
28. 높낮이조절테이블		7	23.3%
29. 전동휠체어	4	13.3%	
평 균		87	16.10%
30. 자료검색 및 대출 대행	인적 지원	14	46.7%
31. 도서관 이용교육		5	16.7%
32. 책 읽어주기		3	10.0%
33. 자료 입력 및 스캐닝 서비스		3	10.0%
34. 시간제 도우미		2	6.7%
35. 순환제 도우미		8	26.7%
36. 전담직원		7	23.3%
평 균		42	20.01%
37. 특수자료(접자도서)	자료 지원	2	6.7%
38. 대출기간 장기간 설정		3	10.0%
39. 대출책수 추가 설정		4	13.3%
평 균		7	10.0%
전체 평균			25.54%

으로 조사하였다. 세부항목들은 법적·제도적 설치 규정, 장애인 기관의 시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도서관, 우수대학의 사례 등을 종합하여 총39개 항목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들 개별항목들의 유무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항목별 설치 대학수는 <표 11>과 같다.

<표 11>과 같이, 대학도서관의 장애학생에 대하여 지원하는 항목의 전체 제공율은 25.54%로 높지 않은 비율을 나타냈다. 부문별 제공율을 분석해 보면, 시설부문이 56.05%의 설치율을 나타내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수기자재는 16.1%, 인적지원서비스는 20.01%가 수행되었다. 인적 지원에 있어서, 일부 대학들은 대학 본부에 장애 학생 전담부서를 두어 원스톱서비스를 수행하기 때문에, 해당 도서관에서는 이들을 소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특수자료의 소장은 2개(6.7%) 대학뿐이었으며 때문에 자료 지원 서비스 역시 적극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의 주요 목적은 학습이나 연구에 필요한 학술자료들을 찾고 이용하기 위한 곳이다. 물리적 접근성이 좋다 하더라도 실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접근 시

설조차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현 시점에 대학에서의 장애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는 자극히 기본적인 1차적 단계를 밟은 상태이다. 이제는 2차적 단계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심장이라는 말은 상상하리만치 당연한 정의이다. 장애 학생들에게 대학 문을 열어준 것처럼 학문에 매진할 수 있는 도서관의 문 또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활짝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 장애학생들에게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홈페이지이며, 마찬가지로 장애학생들 역시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을 때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홈페이지이다. 이 조사에서는 서울·경기지역 대학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페이지가 있는지, 있다면 찾아보기 쉬운 위치에 있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30개 대학 중에서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대학은 11개(36.7%) 대학이었으며, 어느 페이지에도 안내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 19개(63.3%) 대학이었다. 세부 내용은 다음 <표 12>과 같다.

<표 12>에 제시한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메

<표 12>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게시 및 게시 위치

게시 위치	대학수	비율	안내 제목 / 안내 페이지명
메인페이지	5	16.7%	장애우콜서비스, 장애우도우미, 장애인지원, 장애우서비스
서브페이지	6	20.0%	출입안내, 자료실안내, 이용안내, 층별안내
없음	19	63.3%	없음
합 계	30	100.0%	

인에 게시한 5개(16.7%) 대학도서관은 '장애우'라는 명칭으로 게시되어 상세한 안내를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실제 이들 대학들은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우수한 대학들이었다. 서브페이지에 게재한 6개(20.0%) 대학도서관은 홈페이지에서 어느 메뉴에 게시되어 있는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도서관 소개나 층별 안내 등의 메뉴에서 일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를 볼 때, 장애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는 메인페이지에 범용화된 '장애우'라는 명칭으로 게재하고, 서비스안내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다.

5. 결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관심은 개인의 가치를 인격적으로 보호받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다수의 집단에게만 편중된 발전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시작되었으며, 대학은 1995년에 와서야 비로소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된 현 시점에서, 대학의 심장이라고 하는 도서관이 장애학생을 수용할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의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학업과 연구가 목적인 장애 대학생들이 실제로 대학도서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정보와 자료, 지원 인력 등 도서관 고유의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대학도서관은 장애학생을 위해서 보조 기자재, 장애 유형별 정보자료, 전문 인력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정보이용교육과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및 이해를 위한 교육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 시점에서 장애학생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사항은 도서관의 기본 3요소인 시설, 자료, 인력을 중심으로 요약되었다.

첫째, 시설 부문에 있어서, 이 부문은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부문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보였다. 화장실과 장애인 주차장은 90% 이상의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출입문, 단차 보완, 계단과 같은 시설은 70%정도 갖추어졌으며, 안내 및 지시를 위한 시설물은 20%이하의 수준이었다. 즉, 법적인 규제 내에서 형식적으로 설치된 대학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도서관의 기자재에 있어서, 도서관으로써 갖추어야 하는 장애학생 보조 기자재들은 16%정도의 저조한 확보율을 보이며, 대학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

났다.

둘째, 자료 부문은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도서관이 제공해야 하는 핵심 요소이다. 연구 대상 대학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은 2개 기관 뿐이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실제 장애인 도서관에서도 전자자료와 같은 특수자료의 수서 업무는 개별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료의 질적 양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앞으로 지체 장애인을 위한 교육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겠다.

셋째, 장애학생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신체장애학생들에게는 신체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의 이중 장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연구와 더불어, 일반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연구를 비추어 볼 때, 장애 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동안 불안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이용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도서관 전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위한 교육과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도서관 참고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던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하물며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학문 연구에 매진하는 대학은 장애학생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여러 가지 유형적, 무형적 요소들을 제도적으로 구축·도입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장애학생이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느끼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정원 외 특별전형을 수행하는 서울·경기 소재의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나, 실제 대학에는 전형 방법과 관계없이 여러 유형의 장애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근간으로 향후 연구과제로서,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역할에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장애학생 전용 특수자료의 발행 정책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2005년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우수사례집,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권선진, 2004, 장애인 차별실태와 인권의식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8: 59-75.
- 남태우, 박현영, 2005,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

- 학회지], 37(1): 151-168.
- 노명수, 2006,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현영, 2005, 우리나라 대학생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151-168.
- 박희서, 2002,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배경재, 박승진, 2006,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2): 273-290.
- 변성현, 2006, 「통합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보건복지부 [인용 2007.12.15].
 <<http://www.mohw.go.kr/>>.
- 양영주, 2006,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전자도서관 설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명주, 2004, 장애유형별 사립대학복지시설에 관한 고찰,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1(6): 22-32.
- 이상희, 2005, 장애학생 지원조직 구성과 실제, 『인문과학논총』, 15: 103-118.
- 이영숙, 2007, 장애인정보격차에 관한 소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4): 74-75.
- 전재봉, 2002, 장애인에 대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4): 158-173.
- 전재봉, 1993,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구성요소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4: 139-169.
- 정정진, 2003,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및 학습권 보장방안 연구.
- 조현숙, 2007,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하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 조홍중, 강수균, 2005,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실태 및 향후 방향에 관한 연구, 『난청과 언어장애연구』, 28(1): 3-20.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인용 2007.12.15].
 <<http://univ.kcue.or.kr/>>.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용 2007.12.15].
 <<http://www.kepad.or.kr/>>.
- 황원주, 2004, 「공공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 황혜선, 정보격차의 요인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원칙,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4): 279-297.
- 장애인도서관현지실태조사 결과보고, 장애인도서관 운영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2006.
- Beck, Susan Gilbert, 1995, "Technology for the Deaf: Remembering to Accommodate an Invisible Disability."

- Library Hi Tech, 13: 109-122, 283-289.
- Mates, Barbara T. 1990, "Accessible Technology for the '90s: Library Technologies for the Handicapped," Computers in Libraries, 13(4): 77-88.
- Deveaux, Patricia Ann. 1982, Academic Library Service to Handicapped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PH.D. diss.,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 Chelin, Jacqueline. 1999, "Facilitating access to one and all: report of a project carried out at UWE, Bristol to facilitate access to learning resources for students and staff with disabilities." Library Review, 48(6): 283-289.
- ISO/IEC, 2001, GUIDE 71: Guidelines for standards developments to address the needs of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재인용: 전재봉, p.163.
- Pinder, Chris. 2005, "Customers with disabilities: the academic library response," Library Review, 54(8): 464-471.
- U.S. Department of Commerce, 2000, A National Online: How Americans Are Expanding Their Use of the Internet,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재인용: 전재봉, p.162.